

골재채취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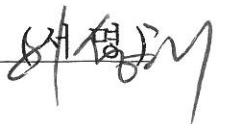
<목 차>

1. 채취금지기간 위반 시 허가취소 규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 자	이름	임대한
	담당부서 (과)	건설산업과		직급	시설주사보
	국장	이성해		연락처	044-201-3546
	과장	박정수		이메일	rurunolja@korea.kr

건설정책국장

이성해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채취금지기간 위반 시 허가취소 규정		
	2.규제조문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4		
	3.위임법령	골재채취법 제26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40일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17년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운영 중단으로 골재수급 안정 도모를 위해 「골재수급 안정대책」 수립('17.12.28, 국토부·해수부) ○ 상기 대책 수립 과정에서, 바다골재 채취에 따른 해양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업체들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대책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내용 반영 - 수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주요 어종 산란기를 채취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허가 취소기로 협의		
	7.규제내용	허가기간 내에 채취금지기간이 설정된 경우, 채취금지기간 1회 위반 시 허가취소 규정 신설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골재채취허가를 득한 자		
	9.규제목표	산란기 등 채취금지기간 준수를 통한 친환경 골재채취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기타	13.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4, 2.개별기준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4, 2.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허가 취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허가 취소			
나.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골재채취 중지 1개월	골재채취 중지 2개월	골재채취 중지 4개월	허가 취소	나.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골재채취 중지 1개월	골재채취 중지 2개월	골재채취 중지 4개월	허가 취소
다.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골재채취 중지 1개월	골재채취 중지 2개월	골재채취 중지 3개월	허가 취소	다.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다만, 허가기간 내 설정된 채취금지기간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골재채취 중지 1개월	골재채취 중지 2개월	골재채취 중지 3개월	허가 취소
라.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4호	골재채취 중지 1개월	골재채취 중지 2개월	허가 취소		라.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기간 내 설정된 채취금지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허가 취소			
마. 법 제30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다만, 골재채취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골재채취중지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1조 제1항 제5호	골재채취 중지 1개월	골재채취 중지 2개월	허가 취소		마.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4호	골재채취 중지 1개월	골재채취 중지 2개월	허가 취소	
바.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채취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중지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6호	허가 취소				바. 법 제30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다만, 골재채취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골재채취중지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1조 제1항 제5호	골재채취 중지 1개월	골재채취 중지 2개월	허가 취소	
						사.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채취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중지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6호	허가 취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17년 남해 EEZ 바다골재채취단지 채취 중단으로 골재수급 안정 도모를 위해 「골재수급 안정대책(‘17.12, 국정현안점검회의)」 수립
- 상기 대책 수립과정에서, 바다골재채취에 따른 해양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허가조건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 제기(수산업계)
 - 「골재수급 안정대책」에 불법 골재채취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내용 반영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위반횟수에 비례한 제재(예 : 1차 영업정지 1개월 ~ 4차 허가 취소)를 검토하였으나, 불법 골재채취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요구가 있어 고의성이 명백한 채취금지기간 위반에 대해 1회 적발 시 허가취소 추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골재채취업계	허가조건 위반행위에 대해 허가를 즉시 취소하는 제도가 헌법적 가치(비례, 평등의 원칙)와 부합하는지 검토 필요	수용 곤란

3. 규제목표

-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골재채취금지기간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골재채취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채취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여 골재업계에 경각심 고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 없음

○ 타법사례

- 식품첨가물 중 질소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영업 허가·등록 취소(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 제공 시 1회 면허 취소(택시운송사업법)
- 아동 가혹행위·방임 시 시설폐쇄(영유아보육법)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골재채취단지를 관리하는 단지관리자(해양환경공단)가 피허가업체의 채취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예정이므로, 충분히 준수가능할 것으로 예상

○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적 집행에 업무량이 추가되지는 않으므로 업무 추진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관계부처, 수산업계로 이루어진 민관협의체* 운영('18.10 ~ '19.3, 6회)을 통해 동 개정안 마련

* (구성) 국토부, 해수부, 수협, 지역 어민, 해양환경공단 등

2. 향후 평가계획

- 사실상 동 개정안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인 EEZ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채취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채취금지기간 내 채취 행위를 하는 업자에 대하여 실시간 관리 계획

3. 종합결론

- 동 규제는 골재채취허가 시 설정한 채취금지기간을 골재채취업자가 준수하게 하여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 규제 순응도,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예상되는 문제가 크지 않으며, 불법채취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규제수단으로 판단